|  |  |  |
| --- | --- | --- |
| **1.3.9 폐기 위험화학품 환경오염방지방법**  국가환경보호총국령 제27호  《폐기 위험화학품 환경오염방지방법》은 2005년 8월 18일 국가환경보호총국 2005년 제14차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였다. 현재 이를 공포한다. 2005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 해진화  　　 2005년 8월 3일  **제1조** 폐기 위험화학품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와 관련법률, 법규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폐기 위험화학품이라 함은 사용을 거치지 않고 소유자로부터 버려졌거나 포기한 위험화학품과 도태, 위조, 기한이 지난 위험화학품, 공안, 세관, 품질검사, 공상, 농업, 안전관리, 환경보호 등 주관부서에서 행정관리 활동 중 법에 따라 몰수한 위험 화학품 및 접수한 위험화학품을 말한다.  폐기 위험화학품은 위험폐기물에 속하며 국가위험폐기물 목록에 포함된다.  **제3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폐기 위험화학품의 발생, 수집, 운송, 저장, 이용, 처리활동의 환경오염 방지에 적용한다.  실험실에서 발생한 폐기 시제, 약품 환경오염의 방지도 이 방법을 적용한다.  폐기 위험화학품을 담은 용기와 폐기 위험화학품 오염을 받은 포장물은 위험폐기물에 따라 관리를 진행한다.  이 방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기 위험화학품 환경오염의 방지는 폐기 위험화학품의 발생량 감소, 폐기 위험화학품 안전 및 적정이용과 폐기 위험화학품 무해화 처리의 원칙을 실행한다.  **제5조** 국가에서는 폐기 위험화학품의 회수이용 활동에 유리한 경제, 기술정책과 조치의 이용을 지지하고 폐기 위험화학품에 대하여 충분한 회수와 안전 적정이용을 실행한다.  국가에서는 폐기 위험화학품의 집중처리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폐기 위험화학품 오염방지의 산업화 발전을 추진한다.  **제6조** 국무원 환경보호부서에서는 전국 폐기 위험화학품 환경오염방지 사업에 대하여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 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부서에서는 그 행정구역 내의 폐기 위험화학품 환경오염방지사업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7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폐기 위험화학품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제8조** 위험화학품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 사용자는 폐기 위험화학품에 대하여 오염방지 책임을 진다.  위험화학품 생산자는 생산항목과 규모를 적정 배치하고 국가 관련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을 지키며 폐기위험화학품의 생산량을 되도록 감소시켜야 한다.  위험화학품 생산자는 스스로 혹은 상응 경영분류와 경영규모가 있는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갖고 있는 단위에 위탁하여 폐기위험 화학품에 대하여 회수, 이용, 처리를 진행할 책임이 있다.  위험화학품 수입자, 판매자, 사용자는 상응하는 경영분류와 경영규모가 있는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갖고 있는 단위에 위탁하여 폐기 위험화학품에 대하여 회수, 이용, 처리를 진행할 책임이 있다.  위험화학품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는 사용자와 대중에게 폐기 위험화학품 회수, 이용, 처리 단위와 회수, 이용, 처리방법의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9조** 폐기 위험화학품 발생 단위는 위험화학품 폐기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폐기 위험화학품 관리계획을 제정하며 법에 따라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폐기 위험화학품의 정보등기기록부를 구비해야 한다.  폐기 위험화학품 발생 단위는 법에 따라 소재지 현 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부서에 폐기 위험화학품의 종류, 품명, 성분 혹은 구성, 특성, 생산량, 이동, 저장, 이용, 처리상황, 화학품 안전기술 설명서 등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전항의 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시 즉시에 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  **제10조** 성급 환경보호부서는 폐기 위험화학품 정보교환 쳬계를 구축하고 폐기 위험화학품의 회수와 안전 적정이용을 추진해야 한다.  **제11조** 폐기 위험화학품 수집, 저장, 이용, 처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가 해당 규정에 따라 소재지 성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신청하여 받는다.  위험화학품 생산단위에서 그 제품과 동일한 종류의 폐기 위험화학품을 회수이용, 처리하는 것은 소재지 성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신청하여 받고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상응 생산능력과 완벽한 관리제도 구비  (2) 위험 화학품 회수이용, 처리시설, 기술과 공법 구비  (3) 국가 혹은 지방 환경보호표준과 안전요구의 부대 방지시설과 사고 응급구원 조치 구비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없거나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폐기위험 화학품 수집, 저장, 이용, 처리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2조** 폐기 화학품을 회수, 이용하는 단위는 반드시 폐기 위험화학품의 회수, 이용 시설, 설비와 장소가 국가 환경보호 해당 법률법규 및 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이용하지 못하는 폐기 위험화학품에 대하여 국가 해당 규정에 따라 무해화 처리 혹은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13조** 폐기 위험화학품이 발생하는 단위에서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갖고 있는 단위에 위탁하여 폐기 위험화학품을 수집, 저장, 이용, 처리하는 것은 그에게 폐기 위험화학품의 품명, 수량, 성분 혹은 구성, 특성, 화학품 안전기술 설명서 등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접수단위는 접수한 폐기 위험화학품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며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확인을 거쳐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품종, 성분, 특성을 확인한 후 처리해야 한다.  폐기 위험화학품을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수집, 저장, 이용, 처리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4조** 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 사용단위가 생산전이, 생산중지, 영업중지 혹은 해체된 것은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해당규정에 따라 위험화학품의 생산 혹은 저축설비, 재고제품 및 생산 원료에 대하여 적정 처리해야 하며 국가 해당 환경보호표준과 규범에 따라 공장 생산구역의 토양과 지하수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환경유해평가보고를 편집하여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고 비치해야 한다.  용지에 오염을 초래한 것은 환경복구방안을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동의를 거친 후 환경보호부서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오염장소에 대해 환경복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오염장소에 대해 환경복구를 완료한 후 환경보호검사기구에 위탁하여 회복 후의 용지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보고를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15조** 폐기 위험화학품의 용기와 포장재 및 폐기 위험화학품 수집, 저장, 운송, 처리 시설, 장소에 대하여 반드시 위험폐기물 식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16조** 폐기 위험화학품의 이동은 국가 해당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동전표를 작성해야 한다. 구역을 넘는 시 급 이상 행정구역에서의 이동은 법에 따라 이동지역의 시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거친 후 이동할 수 있다.  **제17조** 공안, 세관, 품질검사, 공상, 농업, 안전감독 관리, 환경보호 등 주관부서에서는 행정관리 활동 중 법에 따라 몰수 혹은 접수한 폐기위험 화학품을 상응 경영분류와 경영규모가 있고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갖춘 단위에 위탁하여 회수, 이용, 처리해야 한다.  몰수한 폐기 위험화학품에 대해 명확한 담당자가 있는 것은 처리비용은 담당자가 부담하고 몰수한 행정관리부서에서 책임지고 추납한다. 몰수한 폐기 위험화학품에 대한 명확한 담당자가 없거나 담당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접수한 자가 상납한 폐기 위험화학품은 몰수한 행정주관 부서에서 책임지고 본급 재정에 처리비용을 신청한다.  **제18조** 폐기 위험화학품을 발생, 수집, 저장, 운송, 이용하는 단위의 주요 담당자는 반드시 본 단위 폐기 위험화학품의 관리가 해당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과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며 본 단위 폐기위험 화학품의 환경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폐기 위험화학품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해당 환경보호법률법규, 전업기술과 응급구원 등 분야의 교육을 받아야만 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제19조** 폐기 위험화학품을 발생,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하는 단위는 폐기 위험화학품 돌발 환경사고 응급예방책을 제정하여 현 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하고 필요한 환경응급시설과 설비를 건설하며 정기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폐기 위험화학품 사고가 발생 시 사고 책임단위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환경에 대한 오염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고 즉시에 오염위해를 받을 가능이 있는 주민에게 통보하며 국가 해당 사고 보고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와 해당부서에 보고하여 조사 처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폐기 위험화학품 생산,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 단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이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면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정돈하게 해야 한다. 검사상황과 처리결과는 기록해야 하고 검사인원이 서명한 후 보관해야 한다.  검사 받는 단위는 검사기관에서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하면 여실하게 상황을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감독관리의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본 급 인민정부 혹은 상급 환경보호부서에서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책임을 과하여 개정하게 하고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것은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함부로 폐기 위험화학품을 방치할 경우  (2) 규정에 따라 폐기 위험화학품을 신고 등기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등기의 경우  (3) 폐기 위험화학품을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위탁하여 수집, 저장, 이용, 처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4) 국가 해당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동전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가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폐기 위험화학품을 이동하는 경우  (5) 위험폐기물 식별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6) 폐기 위험화학품 돌발 환경사고 응급 예방책을 하지 않은 경우  **제23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발생한 폐기 위험화학품을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조** 본 방법의 규칙을 위반하고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없거나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에 따르지 아니하고 폐기 위험화학품 수집, 저장, 이용과 처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5조** 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 사용 단위가 생산전이, 생산중지, 영업중지 혹은 해체될 시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것은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하고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국가의 해당 환경보호표준과 규정에 따라 생산구역의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 검사하지 않는 경우  (2) 환경유해평가보고를 작성하지 않고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3) 환경복구방안을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거치지 않고 환경복구를 실시할 경우  (4) 환경복구 후의 검사 보고를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하지 않은 경우  **제26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폐기 위험화학품이 엄중한 환경오영을 초래한 것은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처리를 결정하고 기한 내에 처리임무를 완성하지 않은 것은 본 급 인민정부에서 영업중지 혹은 폐쇄를 결정한다.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한 것은《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7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보호부서의 현장 검사를 거절, 방해하는 것은 현장검사 집행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한다. 개정하지 않거나 검사 시 거짓행위에 대하여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조** 당사자가 기한을 넘기고 행정처벌의 결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결정한 환경보호부서에서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만기가 되도록 벌금을 상납하지 않는 것은 매일 그 벌금액의 3%을 추가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2)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제29조** 본 방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  | **废弃危险化学品污染环境防治办法**  国家环境保护总局令第27号  《废弃危险化学品污染环境防治办法》已于2005年8月18日由国家环境保护总局2005年第十四次局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5年10月1日起施行。  　　局　长　解振华  　　二○○五年八月三十日    **第一条** 为了防治废弃危险化学品污染环境，根据《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危险化学品安全管理条例》和有关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废弃危险化学品，是指未经使用而被所有人抛弃或者放弃的危险化学品，淘汰、伪劣、过期、失效的危险化学品，由公安、海关、质检、工商、农业、安全监管、环保等主管部门在行政管理活动中依法收缴的危险化学品以及接收的公众上交的危险化学品。  废弃危险化学品属于危险废物，列入国家危险废物名录。  **第三条** 本办法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废弃危险化学品的产生、收集、运输、贮存、利用、处置活动污染环境的防治。  实验室产生的废弃试剂、药品污染环境的防治，也适用本办法。  盛装废弃危险化学品的容器和受废弃危险化学品污染的包装物，按照危险废物进行管理。  本办法未作规定的，适用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第四条** 废弃危险化学品污染环境的防治，实行减少废弃危险化学品的产生量、安全合理利用废弃危险化学品和无害化处置废弃危险化学品的原则。  **第五条** 国家鼓励、支持采取有利于废弃危险化学品回收利用活动的经济、技术政策和措施，对废弃危险化学品实行充分回收和安全合理利用。  国家鼓励、支持集中处置废弃危险化学品，促进废弃危险化学品污染防治产业化发展。  **第六条** 国务院环境保护部门对全国废弃危险化学品污染环境的防治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  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部门对本行政区域内废弃危险化学品污染环境的防治工作实施监督管理。  **第七条** 禁止任何单位或者个人随意弃置废弃危险化学品。  第八条 危险化学品生产者、进口者、销售者、使用者对废弃危险化学品承担污染防治责任。  危险化学品生产者应当合理安排生产项目和规模，遵守国家有关产业政策和环境政策，尽量减少废弃危险化学品的产生量。  危险化学品生产者负责自行或者委托有相应经营类别和经营规模的持有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单位，对废弃危险化学品进行回收、利用、处置。  危险化学品进口者、销售者、使用者负责委托有相应经营类别和经营规模的持有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单位，对废弃危险化学品进行回收、利用、处置。  危险化学品生产者、进口者、销售者负责向使用者和公众提供废弃危险化学品回收、利用、处置单位和回收、利用、处置方法的信息。  **第九条** 产生废弃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建立危险化学品报废管理制度，制定废弃危险化学品管理计划并依法报环境保护部门备案，建立废弃危险化学品的信息登记档案。  产生废弃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依法向所在地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部门申报废弃危险化学品的种类、品名、成份或组成、特性、产生量、流向、贮存、利用、处置情况、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等信息。  前款事项发生重大改变的，应当及时进行变更申报。  **第十条** 省级环境保护部门应当建立废弃危险化学品信息交换平台，促进废弃危险化学品的回收和安全合理利用。  **第十一条** 从事收集、贮存、利用、处置废弃危险化学品经营活动的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所在地省级以上环境保护部门申领危险废物经营许可证。  危险化学品生产单位回收利用、处置与其产品同种的废弃危险化学品的，应当向所在地省级以上环境保护部门申领危险废物经营许可证，并提供符合下列条件的证明材料：  （一）具备相应的生产能力和完善的管理制度；  （二）具备回收利用、处置该种危险化学品的设施、技术和工艺；  （三）具备国家或者地方环境保护标准和安全要求的配套污染防治设施和事故应急救援措施。  禁止无危险废物经营许可证或者不按照经营许可证规定从事废弃危险化学品收集、贮存、利用、处置的经营活动。  **第十二条** 回收、利用废弃危险化学品的单位，必须保证回收、利用废弃危险化学品的设施、设备和场所符合国家环境保护有关法律法规及标准的要求，防止产生二次污染；对不能利用的废弃危险化学品，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无害化处置或者承担处置费用。  **第十三条** 产生废弃危险化学品的单位委托持有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单位收集、贮存、利用、处置废弃危险化学品的，应当向其提供废弃危险化学品的品名、数量、成分或组成、特性、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等技术资料。  接收单位应当对接收的废弃危险化学品进行核实；未经核实的，不得处置；经核实不符的，应当在确定其品种、成分、特性后再进行处置。  禁止将废弃危险化学品提供或者委托给无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单位从事收集、贮存、利用、处置等经营活动。  **第十四条** 危险化学品的生产、储存、使用单位转产、停产、停业或者解散的，应当按照《危险化学品安全管理条例》有关规定对危险化学品的生产或者储存设备、库存产品及生产原料进行妥善处置，并按照国家有关环境保护标准和规范，对厂区的土壤和地下水进行检测，编制环境风险评估报告，报县级以上环境保护部门备案。  对场地造成污染的，应当将环境恢复方案报经县级以上环境保护部门同意后，在环境保护部门规定的期限内对污染场地进行环境恢复。对污染场地完成环境恢复后，应当委托环境保护检测机构对恢复后的场地进行检测，并将检测报告报县级以上环境保护部门备案。  **第十五条** 对废弃危险化学品的容器和包装物以及收集、贮存、运输、处置废弃危险化学品的设施、场所，必须设置危险废物识别标志。  **第十六条** 转移废弃危险化学品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填报危险废物转移联单；跨设区的市级以上行政区域转移的，并应当依法报经移出地设区的市级以上环境保护部门批准后方可转移。  **第十七条** 公安、海关、质检、工商、农业、安全监管、环保等主管部门在行政管理活动中依法收缴或者接收的废弃危险化学品，应当委托有相应经营类别和经营规模的持有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单位进行回收、利用、处置。  对收缴的废弃危险化学品有明确责任人的，处置费用由责任人承担，由收缴的行政管理部门负责追缴；对收缴的废弃危险化学品无明确责任人或者责任人无能力承担处置费用的，以及接收的公众上交的废弃危险化学品，由收缴的行政管理部门负责向本级财政申请处置费用。  **第十八条** 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废弃危险化学品的单位，其主要负责人必须保证本单位废弃危险化学品的管理符合有关法律、法规、规章的规定和国家标准的要求，并对本单位废弃危险化学品的环境安全负责。  从事废弃危险化学品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活动的人员，必须接受有关环境保护法律法规、专业技术和应急救援等方面的培训，方可从事该项工作。  **第十九条** 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废弃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制定废弃危险化学品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报县级以上环境保护部门备案，建设或配备必要的环境应急设施和设备，并定期进行演练。  发生废弃危险化学品事故时，事故责任单位应当立即采取措施消除或者减轻对环境的污染危害，及时通报可能受到污染危害的单位和居民，并按照国家有关事故报告程序的规定，向所在地县级以上环境保护部门和有关部门报告，接受调查处理。  **第二十条** 县级以上环境保护部门有权对本行政区域内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废弃危险化学品的单位进行监督检查，发现有违反本办法行为的，应当责令其限期整改。检查情况和处理结果应当予以记录，并由检查人员签字后归档。  被检查单位应当接受检查机关依法实施的监督检查，如实反映情况，提供必要的资料，不得拒绝、阻挠。  **第二十一条** 县级以上环境保护部门违反本办法规定，不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一级环境保护部门依据《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第六十七条规定，责令改正，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二条** 违反本办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部门依据《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第七十五条规定予以处罚：  （一）随意弃置废弃危险化学品的；  （二）不按规定申报登记废弃危险化学品，或者在申报登记时弄虚作假的；  （三）将废弃危险化学品提供或者委托给无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单位从事收集、贮存、利用、处置经营活动的；  （四）不按照国家有关规定填写危险废物转移联单或未经批准擅自转移废弃危险化学品的；  （五）未设置危险废物识别标志的；  （六）未制定废弃危险化学品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的。  **第二十三条** 违反本办法规定的，不处置其产生的废弃危险化学品或者不承担处置费用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部门依据《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第七十六条规定予以处罚。  **第二十四条** 违反本办法规定，无危险废物经营许可证或者不按危险废物经营许可证从事废弃危险化学品收集、贮存、利用和处置经营活动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部门依据《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第七十七条规定予以处罚。  **第二十五条** 危险化学品的生产、储存、使用单位在转产、停产、停业或者解散时，违反本办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部门责令限期改正，处以一万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  （一）未按照国家有关环境保护标准和规范对厂区的土壤和地下水进行检测的；  （二）未编制环境风险评估报告并报县级以上环境保护部门备案的；  （三）未将环境恢复方案报经县级以上环境保护部门同意进行环境恢复的；  （四）未将环境恢复后的检测报告报县级以上环境保护部门备案的。  **第二十六条** 违反本办法规定，造成废弃危险化学品严重污染环境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部门依据《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第八十一条规定决定限期治理，逾期未完成治理任务的，由本级人民政府决定停业或者关闭。  造成环境污染事故的，依据《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第八十二条规定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七条** 违反本办法规定，拒绝、阻挠环境保护部门现场检查的，由执行现场检查的部门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或者在检查时弄虚作假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部门依据《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第七十条规定予以处罚。  **第二十八条** 当事人逾期不履行行政处罚决定的，作出行政处罚决定的环境保护部门可以采取下列措施：  （一）到期不缴纳罚款的，每日按罚款数额的百分之三加处罚款；  （二）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二十九条** 本办法自2005年10月1日起施行。 |